

부산지방법원 2022. 4. 7 선고 2021나53405(본소), 2021나53412(반소) 판결

[부당이득금반환 · 기타(금전)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

담당변호사 김현영, 김규태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청률

담당변호사 최병일, 석지혜

변 론 종 결 2022. 3. 10.

판 결 선 고 2022. 4. 7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. 5. 26. 선고 2019가단312001(본소), 2020가단 318630(반소)

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93,407,4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6,064,5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을 고려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【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】

○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~14행의 “증인 H”를 “제1심 증인 H”로 고친다.○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“④ 원고와”부터 제7면 제8행의 “보이는 점,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④ E 등은 피고를 상대로 2018. 12. 6.경 소외 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(부산지방법원 2018가합50037) 피고가 E에게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(운송부대시설) 대금으로 교부한 액면금 100,000,000원의 약속어음도 지급·결제되지 않아,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정산합의를 체결할 당시 E과 사이에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였는데, 이 사건 정산합의서(갑 제2호증 합의각서, 이하 같다) 제8조에는 ‘피고가 E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1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E에게 지급하고 어음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정산한다’고 규정되어 있고, 위 정산합의서 제8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을 예정한 약속어음은 피고가 E 등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대금으로 교부한 위 액면금 100,000,000원의 약속어음인바, 이러한 정산합의가 체결된 이후인 2019. 1. 28.경 피고가 E 등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결제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으며, 이에 따라 E 등도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50037 소송을 취하하였음을 고려하면,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대금 외에 차고지 등 부대시설 건축물 대금인 위 약속어음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가 E에 대한 약속어음 문제를 해결하고, 원고와의 정산항목에 이를 반영하여 선급비용으로 가설건축물 미경과 비용(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비용) 71,084,337원을 산입하는 내용의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(만약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양도대금 1,000,000,000원에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대금을 100,000,000원으로 산정하여 포함하였다면, 피고가 E 등과의 소송 및 약속어음금을 자신의 책임으로 해결하고 원고에게서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족하고 이와 별도로 약속어음금에 대한 정산을 약정할 필요가 없다),』

○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“날인한 점”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날인한 점, 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1,000,000,000원의 양도대금을 한정면허버스 7대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대금 900,000,000원 및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 대금 100,000,000원으로 구분하였다거나 소외 회사 영업 전체를 양수하는 데 있어 총 1,000,000,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뿐 차고지 부대시설 건축물을 별도의 정산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정산합의를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및 합의각서와

다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병준, 판사 안혜미, 판사 허성민